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5.

국토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6월 16일, 송기헌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 2025년 6월 1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2025.8.2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 소위원회부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026.4.28.) 상정, 축조심사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2026.4.30.) 상정,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국회의원 송기헌)

현행법은 공사대금 체불 방지 등을 위하여 공공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건설기계 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이러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

그런데 최근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체불 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건설기계 대여대금에 대해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여 대여대금 체불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에 관하여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대금 지급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개정안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에 대하여,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대금 청구·지급 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법 제34조제9항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법 제34조제9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에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이하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이라 함)을 이용하여 공사대금 청구·수령하도록 하고 있고,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제34조제9항 후단의 위임 규정에 따라, 공사대금 청구·지급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현행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 및 제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및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의 몫을 구분하여 공사대금 지급대상자별로 청구(시행규칙 제28조제7항제1호나목)하고, 청구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약정계좌를 지급대상자별로 등록(시행규칙 제28조제7항제1호다목)하도록 하고 있으며,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

템등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로 공사대금 청구서를 작성하였는지, 지급대상자별로 구분하여 청구하였는지 적절성을 확인(시행규칙 제28조 제7항제2호가목)하고, 지급대상자별로 등록된 약정계좌에 직접 입금(시행규칙 제28조제7항제2호나목)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같은 체계로 규정되어 있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한 공사대금 청구·지급 규정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에 대해서도 준용하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현행법 제34조제9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이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로, ‘공사대금’은 ‘건설기계 대여대금’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현재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발주자 또는 수급인에게 청구하는 체계에서,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직접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청구하면, 이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확인하는 단계를 거쳐 발주자 또는 수급인에게 청구되는 체계로 변경되는 것으로 보이며,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대금 청구·지급 시에 적용되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대금 청구에까지 확대함으로써, 건설기계 대여대금 청구·지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공사대금 지급의 투명성 제고 및 체불 방지를 위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도개선 필요성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나 의무화보다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됨.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내용을 반영함.